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9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이학영 · 임호선 · 김영배
김교홍 · 안호영 · 박희승
박 정 · 강준현 · 신영대
위성곤 · 김상욱 · 김영호
박민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u>